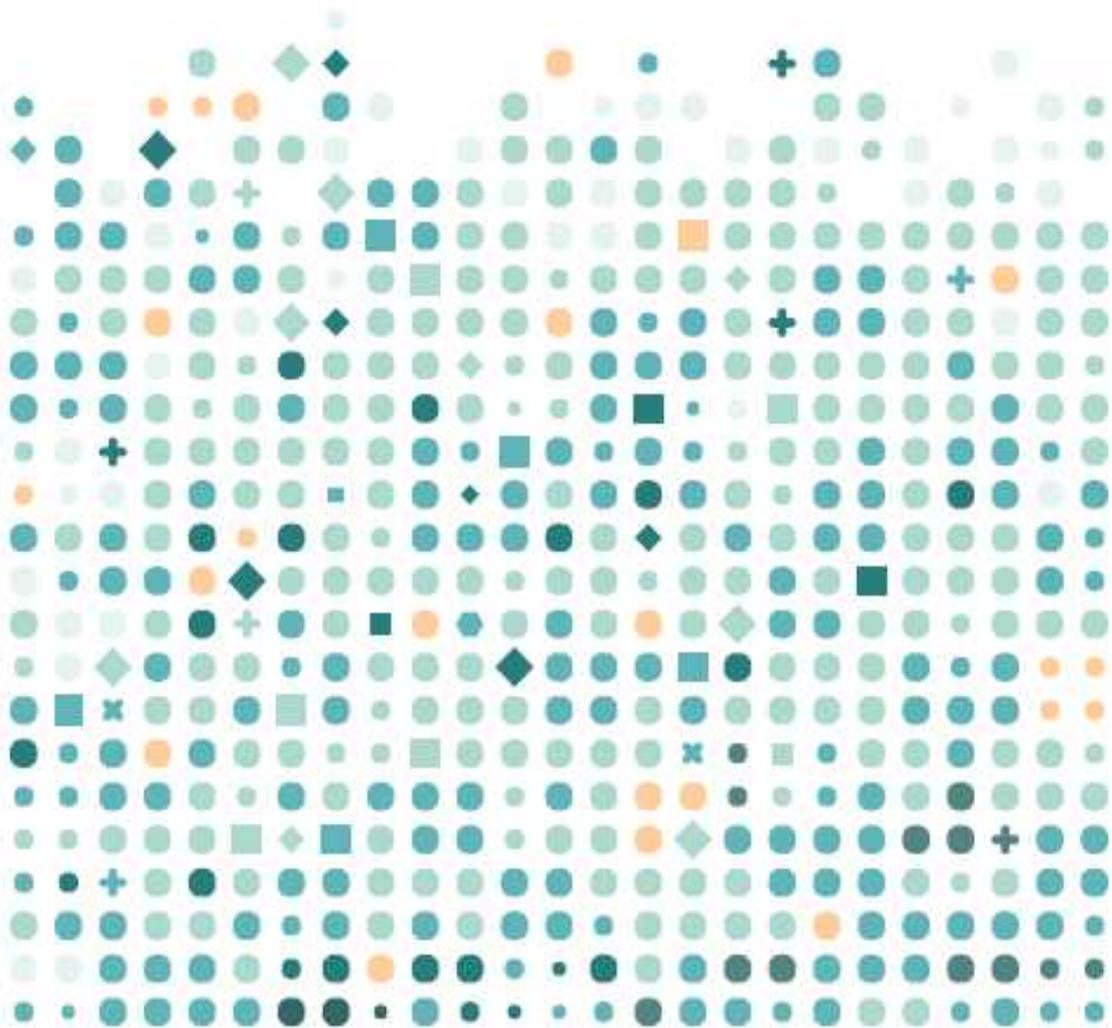


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작성 및 운영지침

2018. 10



1.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는 개별 관광지점에 대한 입장객 집계자료로써,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관광객 총량으로 사용할 수 없음
2. 해당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제113005호로 지정된 보고통계로서 행정보고 형식으로 통계가 생산되고 있음. 이에 따라 최초 입력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입력수치에 대한 철저한 검수가 필요함
3. 신규관광지점 등록 시 승인받은 객관적인 집계방식 이외의 집계방식으로 측정된 관광객 수를 보고할 수 없음
4. 내외국인 집계가 불가능한 지점의 경우 총원으로 입장객 수를 보고해야함

목 차

1. 통계 개요	1
1.1 통계 명칭 :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」.....	1
1.2 작성 목적.....	1
1.3 법적 근거.....	1
1.4 보고기준 및 주기.....	1
1.5 통계 연혁.....	1
2. 추진 체계	3
2.1 주체별 역할.....	3
2.2 추진 체계도.....	3
3. 주요 용어 정의	4
3.1 관광지점.....	4
3.2 입장객.....	4
3.3 입장객 수.....	4
4. 통계 작성 절차	5
4.1 통계생산 절차.....	5
5. 단계별 세부사항	6
5.1 주요 관광지점 선정.....	6
5.2 입장객 수 집계.....	9
5.3 입장객 현황 보고.....	10
5.4 통계 자료 최종 승인 및 공표.....	10
부 록	11

1. 통계 개요

1.1 통계 명칭 :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」

-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는 1975년 정부승인통계(제113005호)로 지정·생산되고 있음
* 명칭 변경 : 「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」 → 「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」(2013.6)

1.2 작성 목적

- 주요 관광지점 이용객 통계의 생산·배포를 통한 관광객 수요 추정 및 관광시설 공급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함

1.3 법적 근거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2(관광통계)
*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은 「통계법」 규정 적용

1.4 보고기준 및 주기

- 보고 기준 :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지침」에 의거 입장객 수 집계
- 집계 주기 : 월별 집계(기초지자체)
- 보고 주기 : 월별 보고(기초지자체), 분기별 보고(광역지자체)
- 보고 방식 : 관광지식정보시스템(www.tour.go.kr) 입력 프로그램에 관광지점별 입장객 수 입력 후 승인 신청

1.5 통계 연혁

- '74. 1월 : 최초 통계조사 실시
- '75. 7월 : 정부승인통계 지정
- '76. 7월 : 조사주기 변경(월 → 분기)
- '03. 4월 : 관광지 이용객 실측집계 방법 개선 및 실태조사 사업
- '04. 7월 : 통계 명칭 변경(관광객이동현황보고 →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)

- '04. 7월 : 조사 범위 변경(서울시 등 16개 시·도 → 서울시 제외 15개 시·도)
- '11. 10월 : 조사 범위 변경(서울시 제외 15개 시·도 → 서울시 등 16개 시·도)
- '12. 2월 : 통계청,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사무개선 요구(통계법 제12조)
- '13. 4월 :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」 변경 승인 신청(문체부)
- '13. 6월 :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」 변경 승인(통계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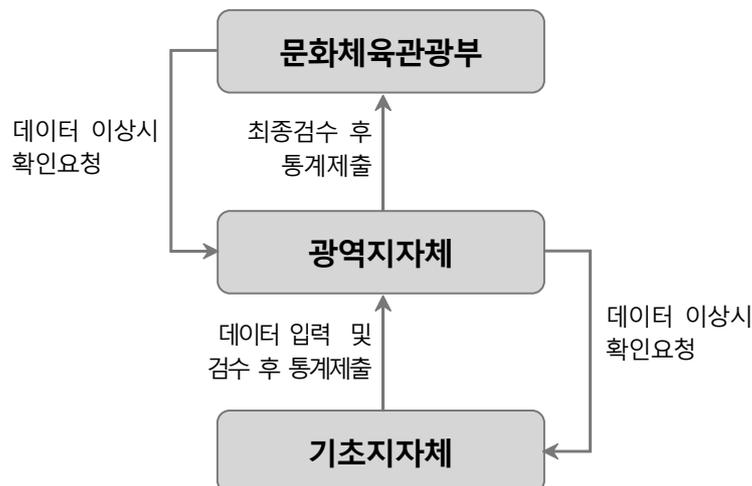
2. 추진 체계

2.1 주체별 역할

- 통계청 : 국가통계승인, 통계 품질관리 등 협조
- 문화체육관광부 : 통계관리 총괄(통계작성지침 작성·통보, 집계지점 선정 및 승인, 전국 지자체 통계집계, 연도별 통계자료집 작성 및 공표)
- 한국문화관광연구원 : 통계작성 및 관리총괄 대행(전국지자체 통계집계, 통계자료집 작성 및 문체부 보고,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관리)
- 광역지자체 : 기초지자체 통계자료 최종검수 및 승인신청, 집계지점 추가/수정/삭제 승인신청 검토·취합 및 문체부 제출
- 기초지자체 : 주요관광지점 집계지점 선정 승인신청, 지점별 통계작성 및 제출(매월, 시스템입력), 집계대상지 추가/수정/삭제 신청 등 관광지점 관리

2.2 추진 체계도

- 기초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집계 대상 관광지점의 입장객 수를 월단위로 입력 및 검수 후 데이터 승인 요청. 광역지자체가 데이터 최종 검수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데이터 최종 승인 및 공표함



3. 주요 용어 정의

3.1 관광지점

-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광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 관광지(붙임2) 중 지자체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 지점으로서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설 또는 공간을 의미함

3.2 입장객

- 관광목적으로 관광지점에 입장한 사람을 의미함

* 제외 대상

- ① 관광지점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
- ② 관광지점 내에서 영리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(1회성 활동 제외)
- ③ 관광지점 관리·운영을 위한 근무자
- ④ 특수목적 방문자(경찰관, 환경미화원 등)
- ⑤ 단순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자 등은 관광목적의 입장객이 아니므로 집계 대상에서 제외함

* 예외 사항

- ① 관광지점에서 일시적 영리활동을 하는 자(이벤트·상설 프로그램 등 행사 관계자, 영화 촬영 등 집계지점을 영리적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자)
- ② 관광목적으로 관광지점을 방문한 지역주민은 '입장객'에 포함하여 집계함

3.3 입장객 수

- 관광지점에 입장한 사람(입장객)의 수를 의미함

* 객관적 방법으로 입장객 수를 측정하고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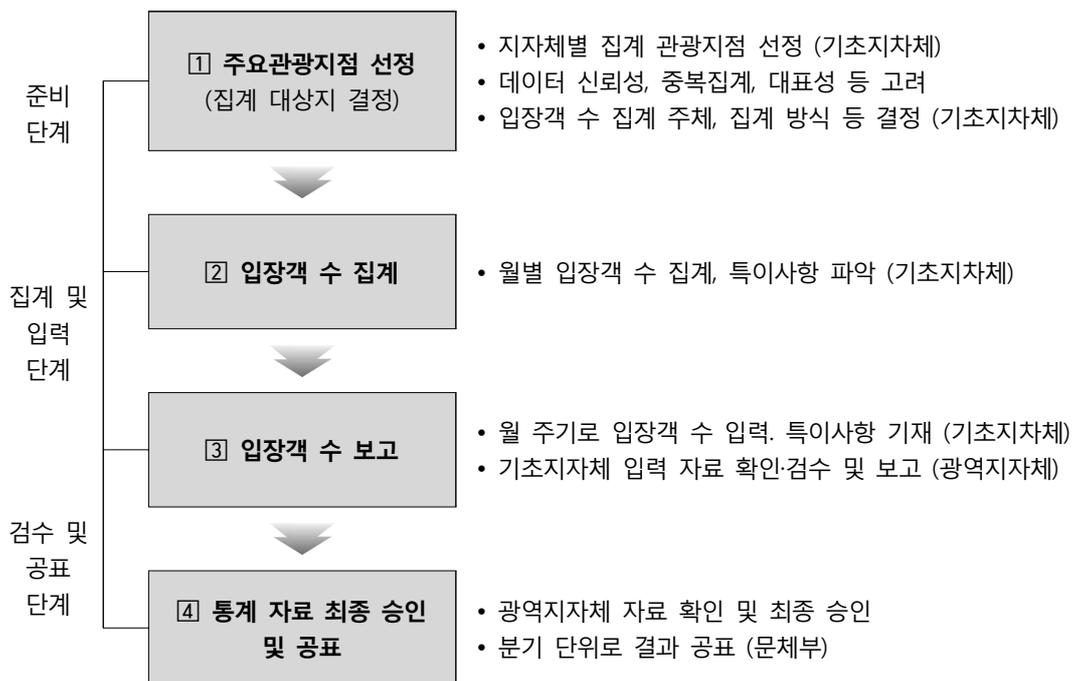
4. 통계 작성 절차

4.1 통계생산 절차

4.1.1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」 생산절차

- ① 집계대상지(주요관광지점) 선정 및 신청
- ② 입장객 수 집계·보고(기초지자체)
- ③ 입장객 현황 검수·보고(광역지자체)
- ④ 전국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승인 및 통계자료 공표(문체부)

4.1.2 통계 생산 절차도



5. 단계별 세부사항

5.1 주요 관광지점 선정

5.1.1 주요관광지점 등록 기준

- 객관적 통계 집계 및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대상지
 - 유·무료 관광지점을 모두 포함하되, 객관적 방식에 의한 입장객 수 집계 가능한 지점만 등록 가능함
 - 입장권, 무인계측기(기계식), 도선료, 100% 사전예약명단, 신분증 확인 등의 집계법을 적용하여 일일 입장객 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
 - 전국단위로 동일한 집계방식을 적용하여 입장객 수를 집계 및 공표하는 경우 (예 : 국립공원 탐방객 수 조사) 유효함
 - 특정관광지점 전체 입장객수를 객관적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개별관광시설별 집계하고 주요관광지점 선정 기준에 따른 집계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

※ 등록시 관광지점 유형별 예외사항

1) 복합관광시설이 밀집된 대상지¹⁾

-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등 복합관광시설이 밀집한 경우 개별시설별 대상지를 선정해야 함(예: 00리조트(스키장), 00리조트(골프장), 00리조트(워터파크) 등 이용시설)
- ※ 복합관광시설 내 이용시설의 예 : 스키장, 스파, 워터파크 등 관광목적의 입장객이 대부분일 경우에 한함

2) 국립공원

- 다수 지역에 걸쳐 입장지점이 나뉘어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집계지점별 대상지점을 선정해야 함(예: 설악산 국립공원(설악동), 설악산 국립공원(약수터) 등)
- ※ 국립공원을 지점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명칭은 반드시 '00 국립공원(000)'의 형식으로 작성해야 함

5.1.2 통계대상지 등록 제외 기준

가. 통계오용 발생가능 지점(중복집계 방지)

- 관광지점 내 시설별 집계방식이 다를 경우, 시설별 입장객 수를 합산하여 해당지점의 전체관광객 수로 등록할 수 없음
- 중복집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별로 관광객 수를 집계 하는 경우 주요하다고 판단 하는 하나의 집계방식을 선정²⁾

1) 단 지자체에서는 중복집계가 최소화된 지점을 선정·검토하여 등록신청을 해야하며, 해당 복합관광시설의 지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최종 심사·승인함

2) (ex) A박물관의 집계방식: 유료(입장권발권), 무료(무인계측기)의 경우 대표적인 집계방식 1개만 선정하여 신청

- 단일 입구가 명확하지 않은 오픈된 공간의 경우 중복집계우려가 있어 관광지점으로 등록 불가
- 나. 객관적 방식의 집계가 불가능한 지점
 - 목측, 일지, 주차차량 조사, 표본조사 등을 통한 입장객 수 추정 방식의 집계가 이루어지는 관광지점 등이 해당됨
- 다. 관광목적의 방문이 아닌 관광지점
 - 숙박시설 숙박객 수(호텔, 리조트 내 숙박시설, 모텔, 장/여관 등), 식음시설, 보세판매 시설 및 복합관광 시설 내 헬스장, 수영장, 사우나, 미용시설 등 단순 부대시설성격의 관광지점은 제외함
- 라. 특수한 형태의 관광지³⁾
 - 한곳에 지정된 관광지점이 아닌 매년 장소가 변경되는 축제, 이동형 관광코스(관광 교통시설, 자전거길 구간, 축제 등) 등은 등록에서 제외함

5.1.3 통계 대상지 등록절차

가. 주요관광지점 등록 절차

- 기초지자체 통계작성 관광지점 선정 승인신청 → 광역지자체 심사(적합성 검토) → 문체부 심사 및 승인

※ 승인신청 절차

- 1) "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집계대상지 신규등록 요청" 공문발송([부록 3] 사용)
 - 신청기간 : 연 2회(6월), (12월)
 - 상반기 신청지점 : 당해년도 3분기(7월) 데이터부터 입력
 - 하반기 신청지점 : 익년도 1분기(1월) 데이터부터 입력⁴⁾
 - 수신처 : 광역시/도
 - 붙임문서 : 통계대상지 설명자료(집계방식 포함) 및 일별 통계 증빙자료
- 2) 관광지식정보시스템(www.tour.go.kr)에서 집계대상지 신규등록 요청(이용안내서 참조)
 - 통계대상지 등록시 관광지점 정보(사진·규모·보유시설 등의 현황자료), 관광지점 안내자료, 집계범위를 명시한 집계방법 증빙자료를 첨부
 - 공문 첨부 및 증빙자료 입력 필수
- 3) 광역지자체는 신규신청 관광지점리스트를 작성하여,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공문으로 송부 (신청기간 마감일 일주일 이내)

3) 단 지자체에의 판단 하에 특이사항이 있는 관광지점의 경우 협의 후 등록 신청 가능

나. 신규 등록 시 유의사항

- 주요관광지점 명칭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함
- 「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」와 「지역통계연보」에 중복 수록된 관광지점의 경우 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한 입장객 수가 수록되어야 함
- 지자체가 신청한 관광지점의 성격(관광목적의 이용 등), 집계 방법(객관적 집계 방식 적용 여부), 기타 사항(타 관광지점과 중복집계 가능성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 후 통보함

5.1.4 주요관광지점 통계대상지 관리

가. 주요관광지점 변경 절차

- 기초지자체 통계작성 관광지점 변경사항 적용 신청* → 광역지자체 심사(타당성 검토) → 문체부 심사 및 승인
- 주요관광지점 명칭변경, 집계방식 유형변경(유무료, 내외국인 구분), 등록 중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는 해당변경 내용을 광역자치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행)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

※ 변경사항 적용 신청절차

- 1) “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집계대상지 변경요청” 공문발송([부록 4] 사용)
 - 신청기간 : 상시 가능
 - 처리기간 : 변경신청 접수 후 당월 말 시스템에 적용
 - 수신처 : 광역시/도
 - 붙임문서 : 통계대상지 변경사항 관련 증빙자료
- 2) 관광지식정보시스템(www.tour.go.kr)에서 집계대상지 신규등록 요청(이용안내서 참조)
 - 통계대상지 변경요청 사항이 집계방법 및 집계범위 관련인 경우 증빙자료 첨부
 - 공문 첨부 및 증빙자료 입력 필수
- 3) 광역지자체는 정보변경신청 관광지점 리스트를 작성하여,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공문으로 송부(매월 25일까지)

나. 집계방식 변경 시 유의사항

- 정보변경 후 주요관광지점 명칭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함
- 관광지점 방문유형(유·무료), 총원구분⁵⁾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집계 방식 증빙자료(집계방식 및 일일내역서)를 반드시 첨부

4) 신청시점에 따라 통계적용시점 동일, 소급적용 불가
 5) 내·외국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원으로 변경하여야함

5.2 입장객 수 집계

5.2.1 집계방식 및 증빙자료 유형

가. 승인 가능한 집계방식

- 입장권 및 관람권 등 발권 방식
-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집계 방식
- 사전 예약제도에 의한 집계 방식
- 전국단위로 동일한 집계방식을 적용하여 입장객 수를 집계 공표하는 경우
(예 : 국립공원 탐방객 수 조사) 등

나. 입장객 수 산출기간

- 1일 입장객 수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각 월의 총 입장객 수를 산출함

다. 증빙자료 구비

- 입장권 및 관람권 판매 내역
-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입장객 수 집계 일지
- 사전 예약제도 예약명단⁶⁾ 등 1일 입장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보유·관리

5.2.2 집계 자료 관리

-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·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(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)가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·관리함

5.2.3 내외국인 구분

- 내외국인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한 지점을 판단하여 '내/외국인 별도 입력' 또는 '총원'으로 구분하여 통합 집계함

5.2.4 입장객 수 집계 범위

- 입장권 발권을 통한 집계대상지의 경우 실제 입장권 발권기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료 입장객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
- 여객선 탑승권으로 입도객을 측정하는 경우, 섬 주민은 제외하여야 함

6) 사전예약제도로 집계하는 지점의 경우 입장객수 보고 시에는 지점에 입장한 명단만을 보고함

- 다수의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집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포함된 행정 구역의 입장객 수만 포함되어야 함(타 지역의 집계지점을 통해 집계되는 입장객 수는 포함시킬 수 없음)

5.3 입장객 현황 보고

5.3.1 입장객 현황 입력·보고(기초지자체 → 광역지자체)

- 기초지자체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」 담당자는 익월 15일까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(www.tour.go.kr)에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자료 입력 후 광역지자체에 승인 요청
 ※ [부록 5] 입장객 수 조사표를 각 대상지에 배포하여 회수한 원본 자료 및 집계내역 첨부

5.3.2 광역지자체 접수 및 보고(광역지자체 → 문체부)

- (광역지자체) 광역지자체 「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」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입력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자료에 대한 확인 및 단계별 접수 실시

1단계	기초지자체 입력데이터 확인
2단계	미입력,수정 항목 등 통보 및 입력조치
3단계	최종 접수

- (광역지자체) 관할 기초지자체 자료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면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(분기 후 익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최종 접수 완료 및 중앙승인요청 필수)

5.4 통계 자료 최종 승인 및 공표

- 광역지자체가 승인 요청한 자료에 대한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광역지자체 자료 최종 승인(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내에서 승인 처리)
 - 해당 분기 종료 직후 미입력시 입력독려 요청
 - 해당분기 종료 15일 이후 미입력시 공표누락 예고
 - 해당분기 45일 이후 미입력 및 증빙자료 또는 데이터 불량시 공표누락 통보
- 분기별 공표 : 관광지식정보시스템(www.tour.go.kr)에 전산 입력된 「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」은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‘관광지식정보시스템’을 통해 잠정치 공표
- 연도별 공표 : 매년 초(4월)에 전년도 확정치 공표(관광지식정보시스템) 및 보고서 발간·배포
 - ※ 분기별 공표 자료는 확정치가 아니며, 매년 4월에 전년도 확정치 공표함

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작성 및 운영지침

부 록

붙임 1 「관광지방문객 통계」 주요 변경 사항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통계 명칭	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	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
집계 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포함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·관광지, 1종종합·2종 종합·전문 휴양업, 종합·일반·기타 유원시설업, 카지노업 - 국립·도립·군립공원(자연공원법), 자연휴양림(산림법), 온천(온천법), 관광농원(농어촌정비법), 안보관광지(군사시설보호법) - 유료 관광지 - 연간 방문객 수 20만명 이상 무료 관광지 ○ 제외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축제, 이벤트, 상설프로그램 등 공간개념이 아닌 집계 대상지 - 방문 목적상 관광이라고 보기에 부적합한 시설(ไนท์클럽, 음식점, 유흥주점 등), 독립형 숙박시설 (장/여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포함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정의)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 관광지(붙임2) 중 지자체 관광 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 지점 - (특성)주요 관광지점은 관광목적의 비일상적 이용이 주된 목적인 시설 또는 공간으로서 지자체 관광의 거점이 되는 지점으로 선정 ○ 제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간적으로 구분이 모호한 곳 (예: 문화의 거리 등), 주민들의 일상적 이용이나 통과형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제외함 ○ 중복 집계 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접한 관광지점들의 경우 입장객 수 중복 집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점 하나만을 집계 지점으로 선정함 (예: 하나의 읍·면·동 단위 1개 관광지점 선정)
집계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료 지점: 판매 입장권 기준 집계 ○ 무료 지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계방식: 무인계측기, 무료입장권 등 기준 집계 - 추정방식: 조사원이 월 4일 조사 후 월단위 방문객 수 추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객관적인 집계 방식 적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입장권 및 관람권 등 발권 방식 ②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집계 방식 ③ 사전 예약제도에 의한 집계 방식 등 ○ 유·무료 관광지 상관없이 객관적인 집계 방식에 의한 집계가 가능한 경우만 '주요 관광지점'으로 등록 가능

붙임 2 「주요 관광지점」 선정 범위

근거 법령	세부 시설
관광진흥법	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,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등
문화재 보호법	유형문화재, 무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문화재, 보호구역 등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	박물관, 미술관, 박물관자료, 미술관자료, 국립·공립·사립·대학 박물관, 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, 자료관, 사료관, 유물관, 전시관, 전시장, 향토관, 교육관, 문서관, 기념관, 보존소, 민속관, 민속촌, 문화관, 예술관 등
청소년 활동 진흥법	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이용시설, 청소년수련시설 (청소년수련원, 청소년 특화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) 등
농어촌 정비법	농어촌관광휴양단지, 관광농원, 주말농원, 농어촌민박 등
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	농어촌체험휴양마을, 도농교류 등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	전통사찰, 전통사찰보존지, 문화유산 등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	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과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,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 등
온천법	온천 등
자연공원법	국립공원, 도립공원, 군립공원, 지질공원, 공원구역 등
산림 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	자연휴양림, 삼림욕장, 산림치유, 치유의 숲, 숲길, 유형산림문화자산, 무형산림문화자산 등
농림수산식품부령	자연환경보전림, 산림휴양림, 생활환경보전림 등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산림자원, 도시림, 생활림 등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	국민의 숲(체험의 숲, 단체의 숲, 산림레포츠의 숲, 사회환원의 숲) 등
연안관리법	이용연안해역(레저관광구, 해수욕장구), 보전연안해역(해양생태보호구, 경관보호구, 공원구) 등
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(국토해양부 예규)	관리주체에 따른 해수욕장(시범해수욕장, 일반해수욕장, 마을해수욕장), 이용형태에 따른 해수욕장(유영구역, 수상레저 활동 구역) 등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	무인도서, 주변해역, 간조노출지 등

근거 법령	세부 시설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	도시공원, 생활권공원(소공원, 어린이공원, 근린공원), 주제공원(역사공원, 문화공원, 수변공원, 묘지공원, 체육공원 등), 공원녹지, 도시공원 내 골프 연습장 등
자연환경 보전법	생태마을, 생태경관보전지역 등
야생 동식물 보호법	야생생물 등
하천법	하천(국가하천, 지방하천) 등
소하천 정비법	소하천 등
해운법	해운업(해상여객운송사업, 용대선), 해상여객운송사업(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,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,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,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, 순항여객운송사업,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) 등
유선 및 도선사업법	유선사업, 도선사업, 유선장 및 도선장 등
선박 안전법	여객선 등
수상레저 안전법	수상레저활동, 래프팅, 수상레저기구, 동력수상레저기구, 수상레저사업 등
공연법	공연장 등
문화예술 진흥법	공연장(종합공연장, 일반공연장, 소공연장), 야외음악당, 화랑, 조각공원, 지역문화복지시설(문화의 집, 복지회관, 문화체육센터), 문화보급전수시설(국악원, 전수회관) 등
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	국립수목원, 공립수목원, 사립수목원, 학교수목원 등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유원지(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) 등
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	국제회의시설업, 국제회의기획업 등
궤도운송법	궤도사업, 전용궤도 등
경륜·경정법	경륜, 경정, 경주장의 시설 설치 기준 등
한국마사회법	경마, 경마장 등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	보호구역(통제보호구역, 제한보호구역) 등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	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	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등
낙시관리 및 육성법	낙시터, 낙시터업 등
과학관육성법	과학관 등

붙임 3 「주요 관광지점」 등록 신청서(양식)

‘주요 관광지점’ 집계 대상지 등록 신청 목록

<광역지자체 : 광역지자체 명 >							
No.	시군구	집계 대상지명	입장객 수 집계 방식	증빙자료 관리 방식	통계 적용시점	내·외국인 구분	비고
1	(작성 예)		입장권 발권 집계	판매일지 보관	'12.01.01	구분 /미구분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
- ※ 집계 방식 : ① 입장권 및 관람권 등 발권 방식
 ② 무인계측기를 이용한 집계 방식
 ③ 사전 예약제도에 의한 집계 방식 등
- ※ 통계 적용 시점 : 대상지 통계관리 적용 시점
- ※ 내·외국인 구분 : 내·외국인 구분 집계 가능 여부

붙임 4 「주요 관광지점」 등록 변경 신청서(양식)

‘주요 관광지점’ 집계 대상지 등록 변경 신청서

□ 집계 대상지 추가·삭제 신청

시군구	대상지명	입장객 수 집계 방식	신청 사항		신청 사유	통계 적용 시점
			대상지 추가	대상지 삭제		
○○군	◇◇관광지	무인계측기 집계	○		신규 개장	2013년 5월
○○군	△△관광지	입장권 발권		○	폐관	2013년 5월

□ 집계 대상지/집계 방식 신청

시군구	대상지명	변경 사항	변경 사유	통계 적용 시점
○○군	◇◇관광지	입장객 수 집계 방식 변경 (입장권 발권 → 무인계측기 집계)	무료입장으로 변경	2013년 5월

붙임 5 「주요 관광지점」 입장객수 조사표(양식)

□ 「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」 입장객수 조사표

_____년 _____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수

_____시·도 _____시·군·구 담당 _____ 연락처 _____

대상지명	내국인(명)	외국인(명)	계(명)	입장객수 집계 방식	비고	작성자	연락처
◇◇관광지	123	12	135	입장권 발권			
△△관광지	-	-	1234	무인계측기 집계			

※ 내·외국인 구분하여 집계 불가능한 경우 '계' 항목만 입력

※ 대상지 별 작성자 및 연락처 기재 필수

붙임 6 「주요 관광지점」 집계방식(유료 관광지점 서식)

①	관광지점 명칭	
②	소재지	
③	관광지점 소개	
④	규모 및 주요시설	
⑤	시설분류	ex) 박물관, 캠핑장, 유적지 등
⑥	주변관광시설	
⑦	기타정보	
⑧	유료집계방식	입장권 발권 (), 사전예약(), 기타()
⑨	집계방식 증빙사진	ex) 입장권 사진, 매표소 부스, 사전예약 화면 등 ※ 그 외의 방식으로 집계하는 지점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집계 방식 증빙을 첨부 jpg, gif 파일 첨부요망 (bmp, tif 파일 첨부 불가)

붙임 7 「주요 관광지점」 집계방식(무료 관광지점 서식)

①	관광지점 명칭	
②	소재지	
③	관광지점 소개	
④	규모 및 주요시설	
⑤	시설분류	ex) 박물관, 캠핑장, 유적지 등
⑥	주변관광시설	
⑦	기타정보	
⑧	무료집계방식	무료 입장권 발권(), 무인계측기()사전예약(), 기타()
⑨	집계방식 증빙사진	(1) 무인계측기 설치 위치(지도 파일에 체크)
		※ 그 외의 방식으로 집계하는 지점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집계 방식 증빙을 첨부 jpg, gif 파일 첨부요망 (bmp, tif 파일 첨부 불가)
		(2) 무인계측기 설치 사진
		(3) 무인계측기 측정 방향

붙임 8 「주요 관광지점」 일일집계내역서(공통)

① 1일 입장객 수				
1주차			2주차	
	월 일 (1일차)		월 일 (8일차)	
	월 일 (2일차)		월 일 (9일차)	
	월 일 (3일차)		월 일 (10일차)	
	월 일 (4일차)		월 일 (11일차)	
	월 일 (5일차)		월 일 (12일차)	
	월 일 (6일차)		월 일 (13일차)	
	월 일 (7일차)		월 일 (14일차)	
②	일일내역서 증빙	※ 지점에서 받은 일일내역서 증빙을 이미지파일로 증빙 jpg, gif 파일 첨부요망 (bmp, tif 파일 첨부 불가)		

기초지자체 담당자	_____ 사·도 _____ 사·군·구	부서명:	이름 :	Tel:
관광지점 담당자	소속기관명/지점명	부서명:	이름:	Tel:

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작성 및 운영지침

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
(주소)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

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정보팀
(주소)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
(전화) 02-2669-8936 (전송) 02-2669-8930

발행일 2018년 12월

인쇄처 더크리홍보 주식회사
